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의2·제10조제2항·제134조의6·제134조의7 신설 등).
-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48조제1항).
-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 마련, 회원자금조성·운용 계획의 통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을 규정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II. 검토의견

1. 조합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일원화에 따른 품목조합 관련 조문 정비

- 현행 제45조는 지역농협의 임원정수 및 선출에 대해, 제54조는 임원의 해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¹⁾. 구체적으로, 제45조제5항은

직선제, 간선제(대의원회 선출) 및 호선제(이사회 선출) 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합장을 선출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제2항은 제45조에서 규정된 선출 방법에 따른 임원의 해임 방식이 규정되어 있음.

한편, 제107조(지역축협 준용규정) 및 제112조(품목조합 준용규정)에서는 현행 제45조 및 제54조의 조합장 선출 및 해임규정을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각각 준용하고 있음.

○ 안 제45조제5항은 현행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정된 조합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일원화하고, 이에 부합하게 해임 규정을 정비(안 제54조제2항제2호 삭제)²⁾하되 품목조합은 현행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안 제112조(품목조합 준용규정)제1항은 개정안에 따라 삭제된 제5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잘못 규정되어 있음.

-
-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 해임 요구와 총회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 다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직선제뿐만 아니라 간선제(대의원회 선출) 방식으로 선출이 가능하기에 안 제54조제2항의 임원 해임 규정에서는 호선제(이사회 선출) 방식의 제2호만 삭제함.

- 따라서, 품목조합 임원의 해임규정을 별도의 가지조문(수정의견 제110조의2)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1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1조제2호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생 략)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u> 선출한다. 1. <u>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u> 2. <u>대의원회가 선출</u> 3. <u>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u>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선출하</u> <u>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u> -----. <삭 제> <삭 제> <삭 제>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⑥ ~ ⑩ (생략)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생략)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생략) 2. <u>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u> <u>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u> <u>이 경우 이사회</u> <u>의 해임 요구와</u> <u>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u> <u>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u> 3. (생략) ③ . ④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임원의 해임)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략) <u><신 설></u>	같음)	<u>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② 조합원은 제4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u> <u>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u>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u> <u>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 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 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u> <u>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u>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u> ③ <u>제43조제3항 제11호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라 이사회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준용규정)

[illegible]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가목·사목·	방법, <u>대의원회가</u> <u>선출하는 방법,</u> <u>이사회가 이사 중</u> <u>에서 선출하는 방</u> <u>법 중 정관으로</u> <u>정하는 방법으로</u> <u>선출한다”로, 제4</u> <u>9조제1항제12호-</u> ----- -----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 <u>항”을 “조합원이</u> <u>총회 또는 총회</u> <u>외에서 투표로 직</u> <u>접 선출하는 방법</u> <u>및 대의원회가 선</u> <u>출하는 방법”으로,</u> <u>제54조제2항 중</u> <u>제2호를 “2. 이사</u> <u>회에서 선출된</u> <u>조합장: 이사회</u> <u>의 해임 요구에</u> <u>따라 총회에서</u> <u>해임 의결. 이 경</u> <u>우 이사회의 해</u>	<u>조제1항제3호 중</u> <u>“제54조제1항”은</u> <u>“제110조의2제1</u> <u>항”으로, 제45조</u> <u>제5항 중 “선출</u> <u>한다”는 “선출하</u> <u>는 방법, 대의원</u> <u>회가 선출하는 방</u> <u>법, 이사회가 이</u> <u>사 중에서 선출하</u> <u>는 방법 중 정관</u> <u>으로 정하는 방법</u> <u>으로 선출한다”로,</u> <u>제46조제4항제5</u> <u>호 중 “제54조제</u> <u>2항제3호”는 “제</u> <u>110조의2제2항제</u> <u>3호”로, 제49조제</u> <u>1항제12호</u> ----- ----- -----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아목, 제5호가목 · 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 조제2호가목(농업 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 한다)· 마목· 사 목, 제4호(복지시 설의 운영에만 해 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 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 는 계약출하사업” 으로, 제67조제3 항 중 “제57조제1 항제1호”는 “제11 1조제1호”로, 제80 조 중 “합병·분 할 또는 조직변 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② (생략)	<u>임 요구와 총회 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 결 정족수를 준 용한다.”로, 제57 조제2항</u> ② (현행과 같음)	<u>하는 방법 및 대 의원회가 선출하 는 방법”으로, 제 57조제2항</u> ② (개정안과 같 음)
제171조(벌칙) 조합	제171조(벌칙) (현행	제171조(벌칙)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등과 중앙회의 임 원, 조합의 간부 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 부직원, 파산관재 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면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과 같음)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제 77조제2항, 제107 조 또는 제112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 7조·제112조·제 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 제1항(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		2. ----- ----- ----- ----- ----- ----- ----- ----- ----- -----

[illegible]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2조 제2호(제10 7조·제112조 또 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u>제123조</u> , 제125조 제4항, 제125조의 2제3항 또는 제15 9조에 따라 총회 ·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 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 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 니하고 집행한 경 우		----- ----- ----- ----- ----- <u>제110</u> <u>조의2 제1항부터</u> <u>제3항까지, 제12</u> <u>3조</u> ----- ----- ----- ----- ----- ----- ----- ----- ----- -----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2. 도농상생사업비 납부감면 및 추가납부 규정 정비 등

- 개정안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제10조제2항·제134조의6·제134조의7 신설 등).

이에 더해, 개정안은 도농상생사업비의 감면(안 제134조의6제2항) 및 추가납부(안 제142조제2항 전단)를 규정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안 제134조의6제2항은 도농상생사업비가 아닌 도농상생사업비의 ‘납부’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대상은 ‘납부’가 아닌 ‘사업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부’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도농상생사업비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의 3%납부 예외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142조제2항 전단은 중앙회 회장이 회원의 경영상태 및 경제사업 기준에 대해 그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농상생사업비는 안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을 대상으로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사업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142조제2항 전단과 같이 규정될 경우, 중앙회의 회원 모두에게 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도농상생사업비 추가납부 대상자를 ‘회원’에서 ‘제134조의6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대상 도시조합’으로 한정하고, 중앙회 회장이 행하여야 할 조치 사항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 총이익의 100분의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 총이익의 100분의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3 이내의 범위</u> <u>서 중앙회 정관으</u> <u>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도농상생사</u> <u>업비를 납부하여</u> <u>야 한다.</u> <u>② 중앙회는 도시</u> <u>조합의 경영여건</u> <u>을 감안하여 정관</u> <u>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제1항에 따</u> <u>른 도농상생사업</u> <u>비의 납부를 경</u> <u>감하거나 면제할</u> <u>수 있다.</u>	<u>3 이내의 범위</u> <u>서 중앙회 정관으</u> <u>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도농상생사</u> <u>업비를 납부하여</u> <u>야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u> <u>구하고 중앙회는</u> <u>도시조합의 경영</u> <u>여건을 감안하여</u> <u>정관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제1항</u> <u>에 따른 도농상생</u> <u>사업비의 전부 또</u> <u>는 일부를 감면</u> <u>할 수 있다.</u>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생략)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현행과 같음)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개정안 과 같음)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 원의 정관으로 정 하는 경제사업 기 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 하고, 그 결과에	② ----- ----- ----- ----- ----- -----	② ----- ----- ----- -----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3. 이사회 의결사항(준법감시인 임면)을 별도의 가지 호로 신설

○ 현행 제43조제3항³⁾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각호로 나열되어 있음.

그런데, 지역농협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이 안 제44조의2⁴⁾로 신설되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제 43조제3항의 새로운 호에 신설되지 않고 안 제43조제3항제6호에 규정됨.

3)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간부직원의 임면이 별도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별도의 호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현행법 제125조의4⁵⁾에 이미 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이 규정되어 있어, 안 제43조제3항제6호와 같이 “준법감시인”이라고만 규정할 경우 제125조의4에 규정된 준법감시인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으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3조(이사회) ① · ② (생 략)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 략)	제43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제43조(이사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1. ~ 5. (개정안과 같음)

- 5)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6. <u>간부직원의 임면</u> <u><신 설></u>	6. <u>준법감시인 및 간부직원</u> ----- -	6. <u>간부직원의 임면</u> <u>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u>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7. ~ 13. (개정안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u>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⑥ <u>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진술하게 할-----.</u>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최 기 도)